

제337회 임시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3. 2. 1(수)

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171
제출일자	2023. 1. 20.
회부일자	2023. 1. 26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- 가. 2022년 12월 말 기준 도 본청의 총 채무는 1조 5,087억 원으로, 그중 100%를 지역개발채권 매출액(미상환잔액)이 차지하고 있음.
- 나.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서민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,600씨씨 미만 비영업용 소형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타 시·도와 기준을 통일하고, 도 부채를 경감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1,600씨씨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·이전 등록 시 경상북도지역 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.

4. 관련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다. 「지방공기업법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가. 예고기간: 2022. 12. 22. ~ 2023. 1. 11.

나. 예고결과: 해당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가. 예산관련: 비용추계는 적정하며, 지역개발기금 조성규모 축소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운영 필요 (예산담당관)

나.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다.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7. 검토의견

☐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*에 따라 차량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기준에서 1,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는 면제함으로써,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북도 입장에서는 채권발행 축소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*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-4538(2022.11.29.) : “1,000~1,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·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, 시행시기 - ‘23. 3. 1”

☐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제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음

<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(채권의 매출대상 등)>

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,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등록을 신청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

○ 금번 조례 개정은 제5조제1항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임

<매출대상 및 매출기준(제5조제1항* 관련)>

대상별	매 출 대 상	현 행 매출기준	개 정 매출기준
1. 자동차 신규등록	가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		
	1) 1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2/100	二
	2) 1,600cc 이상	" 4/100	4/100
	3) 2,000cc 이상	" 8/100	8/100
	나. 비사업용 승합,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(배기량 1,000cc 이상)	취득세과표의 1.5/100	⇒ 1.5/100
2. 자동차 이전등록 (시·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)	가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		
	1) 1,000cc 이상	취득세과표의 1/100	二
	2) 1,600cc 이상	" 2/100	2/100
	3) 2,000cc 이상	" 4/100	4/100
	나. 비사업용 승합,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(배기량 1,000cc 이상)	취득세과표의 0.8/100	0.8/100

※ 채권발행액 = 차량가액 × 배기량별 요율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채권발행 증가로 인한 부채 확대와 차량가액 및 채권할인을 급증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, 정부시책에 따라 전 시·도의 소형승용차 등록 채권면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, 채권발행에 따른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제

고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미사용 기금 축소로 효율적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

- 경북도의 1,600씨씨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 건, 억원, 2021년 12월말)

구분	계		신규 등록		이전 등록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누계	37	102	17	91	20	11

- 이에 따라 2023년 3월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, 2021년 자동차등록 관련 발행된 채권 중 3만 7천건, 102억원이 매년 감소되는 효과를 발생함

- 또한 2023년 3월 개정안 시행시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억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채권매출	△102	△102	△102	△102	△102	△510
	○ 융자금회수 등	-	-	-	-	-	-
	소계(a)	△102	△102	△102	△102	△102	△510
세출	○ 기금용자	△42	△42	△42	△42	△42	△210
	○ 예치금 등	△60	△60	△60	△60	△60	△300
	소계(b)	△102	△102	△102	△102	△102	△510
□ 총 비용(a-b)		-	-	-	-	-	-

- 한편, 지역개발기금 미사용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(단위: 억원)

연도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예치금	3,583	3,676	3,443	2,466	2,706	4,052

- 이와 같이,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축소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져 경북도의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, 자동차등록 시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로 그 목적과 개선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